|  |  |
| --- | --- |
| ***노스캐롤라이나 영유아 프로그램*** |       |

# **주 불만 제기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원고:** |       |  |  |
|  | **불만 사항이 아동에 특정한 경우 귀하는 아동의 부모입니까?** | [ ] 예 [ ] 아니오 |
|  |
| 주소: |       | 핸드폰: |       |
| 이 양식에는 주 불만 제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불만 사항은 불만 사항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. |
| NC ITP, CDSA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 교육법 (IDEA) 파트 C의 요건을 위반했다는 진술: |
|       |
|  |
|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(필요한 경우 추가 페이지 첨부): |
|       |
|  |
| **불만 사항이 특정 아동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 중지하고 아래에 서명하십시오. 특정 아동에 대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:** |
| 아이의 이름: |       | 생일: |       |
| 자녀의 주소: |       |
|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 중재 제공자의 이름(해당되는 경우): |       |
| 주소: |       |
| 핸드폰: |       |  |
|  |
|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문제의 성격을 설명하십시오. 불만 사항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.(필요시 페이지 추가)      |
|       |  |       |
| *원고 서명* |  | *날짜* |  |
|  |  |
| 부모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식별, 평가, 배치 또는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영유아와 관련된 모든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**있습니다** . 유아 또는 유아의 가족.부모는 또한 자발적인 **중재**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중재 회의는 비공식적이고 공정하며 적대적이지 않은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. 중재가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. 중재는 적법 절차 요청을 제출하기 전이나 불만 처리 과정 중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중재 요청은 적법 절차 청문회 실시 일정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.노스캐롤라이나 영유아 프로그램 ***아동 및 가족 권리 통지에는*** 주 불만 절차에 대한 전체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|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보내기:Early Intervention Section Part C DirectorDivision of Child and Family Well-Being1916 Mail Service CenterRaleigh, NC 27699-1916 |  | **For Office Use Only** |  |  |
|  |  | [ ]  Date received by CDSA |       | [ ]  N/A |  |
|  |  | [ ]  Date received by Early Intervention Section State Office  |       |
|  |  |  |  |  |